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황 지 태*

국 | 문 | 요 | 약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실시해 온 범죄피해조사의 결과가 같은 기간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한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와 추세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주로 범죄 신고율과 관련된 설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에 나타난 괴리 현상은 범죄 신고율과 어떤 식으로든 긴밀하게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신고율과 관련한 설명은 공식통계상의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 지표 사이의 괴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토대로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 주제어 : 범죄피해조사, 공식통계, 범죄시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실시해 온 범죄피해조사의 결과가 같은 기간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한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와 추세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범죄통계에 대해 관심 있는 학자라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조사항목과 표집틀, 분석방법 등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한 상태로 실시된 세 번째 범죄피해조사인 1999년도¹⁾ 범죄피해조사(박순진·최영신, 1999)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3년도에 박순진(박순진, 2003)이 논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2003년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공식통계상의 범죄 발생의 증가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율이 더 크게 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인섭과 황지태(최인섭·황지태, 2004)가 2002년도의 극심한 괴리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두 개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실시된 2006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에서도 범죄피해율은 계속 감소하였다. 2005년도에는 공식통계상 전체 범죄가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 기준으로 2002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범죄피해조사의 주요 측정 항목인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공식통계는 여전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2006년도 범죄피해조사 역시 공식통계상의 추세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조사 결과가 같은 기간의 공식통계와 상반된 추세를 보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주로 범죄 신고율과 관련된 설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순진·최영신, 1999: 70-73; 박순진, 2003: 114-123; 최인섭·황지태, 2003: 10-12).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에 나타난 괴리 현상은 범죄 신고율과 어떤 식으로든 긴밀하게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신고율과 관련한 설명은 공식통계상의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범죄²⁾가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 지표 사이의 괴리

1) 조사는 1999년도에 실시되었지만, 1998년도의 범죄피해 경험을 측정한 것이다(박순진·최영신, 1999: 44-45). 나머지 다른 범죄피해조사들도 역시 조사 시점에서 1년 전의 범죄피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통계상의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에 나타난 괴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축, 즉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 기간(1993년-2005년)에 범죄가 줄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들의 근거는 수차례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에 ‘일관성’이 있다는 근거(박순진, 2003: 120-123) 외에는 사실상 없었다.

이에 본고는 범죄피해조사들의 결과와 공식적인 범죄통계상의 추세가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이 가진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논함과 함께 양 지표 사이의 괴리 현상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설명을 가능케 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조사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범죄 감소 추세를 좀 더 신뢰하는 차원을 넘어 범죄피해조사 ‘밖’에서 실제로 범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양 지표 사이의 괴리 현상을 좀 더 그럴 듯하게 설명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1993-2005년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괴리 현상 요약

19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진행된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추세와 같은 기간 공식통계상 나타난 범죄 증가 추세 사이의 상반성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기에 앞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겠다. 그 전제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러한 의문에 대한 불식과 관련된다. 범죄추세의 비교를 위하여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라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자료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범죄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

- 2) 이 때의 범죄는 교통 범죄와 같은 과실적 성격의 범죄나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새로운 범물이 생겨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신종 범죄를 제외한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국한하기로 한다.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주로 강도와 절도, 폭행이나 성폭력 등 길거리 범죄(street crime)이기 때문이다.

군가에 의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논박(위의 글: 109)은 아주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두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비교의 한 축인 공식통계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면, 그와 같은 논박은 실제로 타당한 논박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공식통계상 집계된 모든 범죄에 대한 통계(전체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공식통계상의 전체범죄에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박, 마약 등)나 피해 자체가 비가시적이고 넓게 분산되는 범죄(환경범죄 등), 과실성 범죄(교통 범죄 등)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해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로 공식통계 내 범죄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박순진의 경우엔(위의 글: 108-109) 비교의 대상을 1990년대 강도범죄와 절도범죄로 국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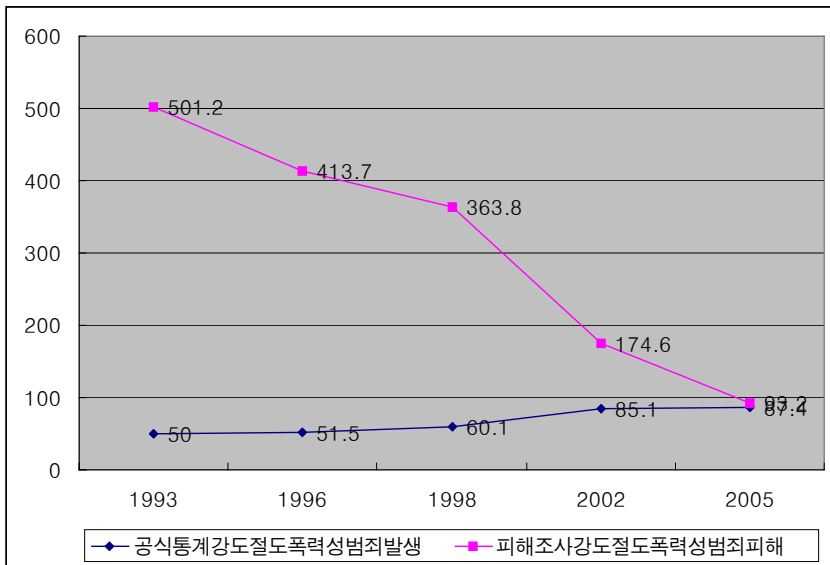
본고에서도 두 자료의 비교를 위해 공식통계상 범죄의 범위를 국한하고자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범위를 강도범죄와 절도범죄로 굳이 국한하지 않고 범죄피해조사의 나머지 주요 측정 항목인 폭행·상해와 성폭력까지 모두 포함한 범죄군으로 설정하였다⁴⁾. 이렇게 할 경우,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전체적인 내용(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등 여덟 가지 범죄유형 전체의 피해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요약적이고 간결한

3) 비교의 대상을 강도범죄와 절도범죄로 국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두 자료의 상이한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박이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논박의 가능성에 대해, 박순진은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조사에서 제시하는 문항이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 자료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위의 글: 109-110).

4) 박순진이 폭행·상해와 성폭력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위의 글: 109). “폭행 및 상해는 범죄통계의 집계에 있어 형법 및 특별법으로 다양하게 집계되는 등 단순하지 아니하여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와 “강간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매번 조사마다 문항의 내용과 구성이 달라져서 조사결과를 비교하거나 추세변화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폭행 및 상해와 관련하여 공식통계상 흩어져 있는 폭행·상해 관련 범죄, 즉 폭행과 상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를 모두 합산하여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폭행·상해를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매 조사에서 문항이 달라졌다고 하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 본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고 설령 문항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측정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 좁아진 것은 아니기(그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 자체가 조금이라도 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감소하였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도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다.

비교가 가능해진다.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할 경우에 그에 대한 비교의 짝이 될 수 있는 공식통계상 범죄유형들은 강도 범죄, 절도 범죄, 폭행·상해성 범죄(폭행과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들의 합산), 성폭력 범죄(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들의 합산)가 됨은 물론이다.

다음 〈그림 1〉에서는 위와 같이 비교의 범위를 한정한 연후에 공식통계상 나타난 해당 범죄군들의 발생 추세상의 변화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추세상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 속에 이미지화하여 양 지표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강도·절도·폭행·상해·성폭력범죄의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그림 1〉에 나타난 두 개의 꺾은 선 그래프 중에서 위쪽에 위치한 것이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추세이고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공식통계상의 추세이다. 이를 보면, 범죄피해조사에서의 범죄피해 감소 추세와 공식통계상의 범죄 발생 증가 추세가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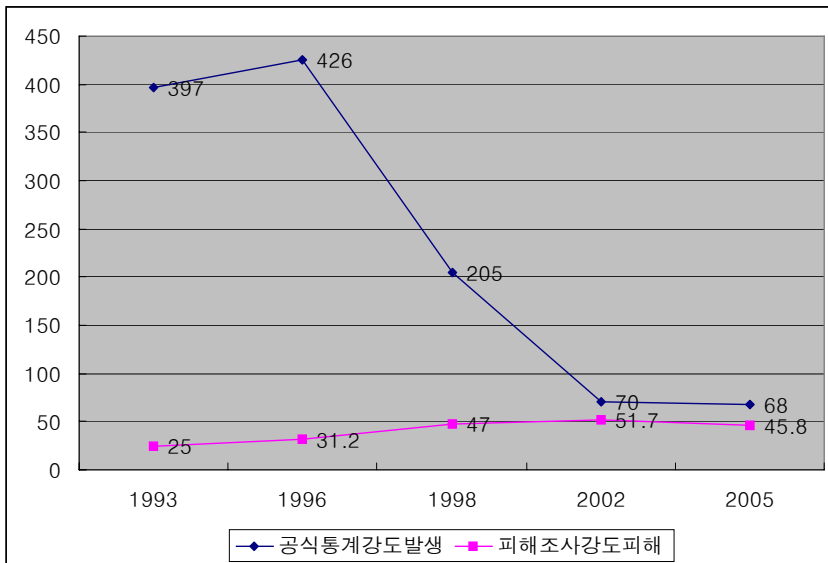
이 중 범죄피해조사 결과는 1994년, 1997년, 1999년, 2003년, 2006년도에 각각 실시된 다섯 차례의 전국 범죄피해조사 결과⁵⁾로 모두 조사 시점에서 1년 전(각각 1993년, 1996년, 1998년, 2002년, 2005년)의 범죄피해경험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범죄피해조사 결과는 각 연도별 여덟 가지 범죄유형 전체의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건수⁶⁾로, 이는 1993년 501.2건, 1996년 413.7건, 1998년 363.8건, 2002년 174.6건, 2005년 93.2건으로 매 조사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도와 2005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10여년 사이에 그 수치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한편, 공식적인 범죄 발생 통계에서 강도, 절도,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를 모두 합한 수치는 1993년에 254,362건, 1996년에 269,579건, 1998년에 320,409건, 2002년에 467,067건, 2005년에 484,322건으로 증가하였다.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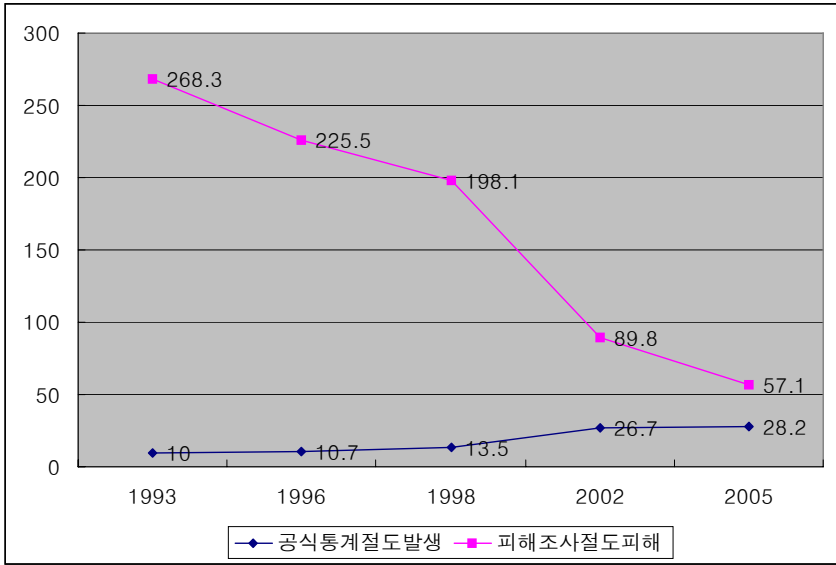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1년 서울지역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래, 조사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6년의 조사를 포함하여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해 왔다(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 박순진·최영신, 1999;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992; 장준오, 2000; 최인섭·기광도, 1998;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최인섭·박순진, 1995). 이 중 1991년에 실시된 조사는 대상 지역이 서울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2000년도의 조사는 1994년 이후의 다른 전국 조사들과 비교할 때 범죄피해의 범위와 설문 문항이 다소 다르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5년간의 범죄 피해 경험을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역시 비교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사 이외의 나머지 범죄피해조사들은 표집 대상과 표본 사례의 수, 표집의 틀 및 질문지 구성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 유형이 자동차 부품 절도, 자동차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범죄의 여덟 가지로 동일함과 동시에 이들 각각에 대한 질문 내용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 다섯 차례의 범죄피해조사 결과는 서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그와 같은 비교를 통해 범죄피해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6) 1998년도(1999년 출간 보고서) 이후 각 범죄피해조사 보고서들에서 범죄피해의 추세는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인구 1,000명 당 범죄 피해 건수의 추세는 한 번도 별도의 그래프나 표로 제시된 적이 없다. 그 이유로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건수를 통한 범죄피해 추세 분석이 덜 중요하거나 혹은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건수가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인원보다 원론적으로 더 적합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식적인 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서의 범죄피해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좀 더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비교를 가정한다면,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인원보다 인구 1,000명 당 범죄피해 건수가 더 적절한 비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범죄통계에서는 범죄의 발생 “건수”가 기본적인 집계 단위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범죄피해자가 한 해에 3건의 범죄피해를 당했고 이를 모두 신고하였다고 한다면, 그 해의 공식적인 범죄통계에는 3건의 범죄가 추가되지 1건의 범죄만 추가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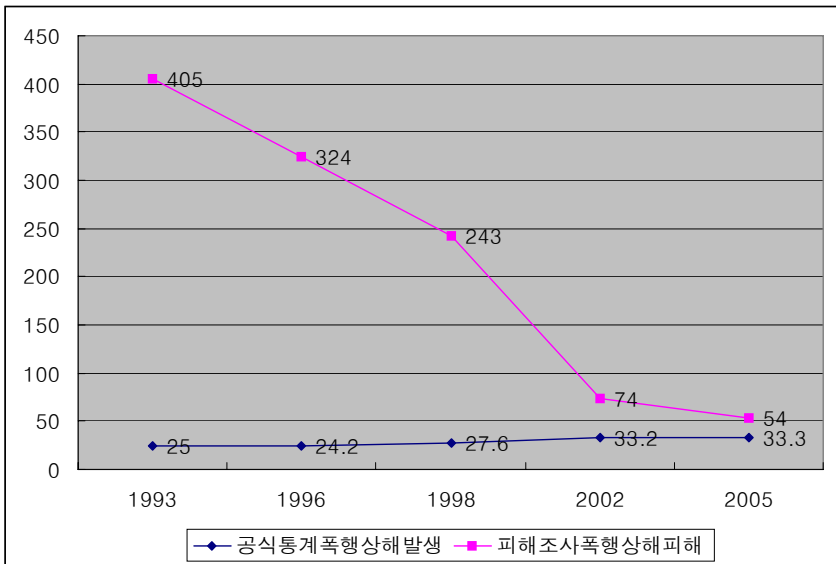
해당 연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를 계산했을 경우에도, 1993년 575.5건, 1996년 592.2건, 1998년 692.2건, 2002년 980.8건, 2005년 1006.1건으로 역시 증가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공식통계 관련 수치는 —두 가지 추세를 한 그래프 안에 넣어 그 상반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 연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 건수를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는 1993년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인 575.5건을 50이라는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연도들에서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의 상대적 값을 구하여 그 추세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즉 1993년도의 범죄율을 50으로 했을 때, 1996년도에는 51.5, 1998년에는 60.1, 2002년 85.1, 2005년 87.4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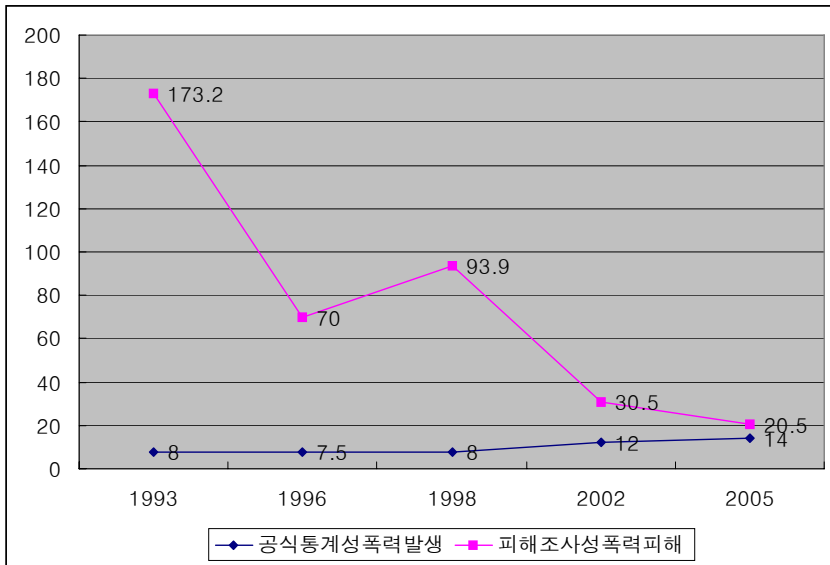
〈그림 2〉 강도 범죄의 공식통계상 증가추세와 범죄피해조사 감소추세



〈그림 3〉 절도 범죄의 공식통계상 증가추세와 범죄피해조사 감소추세



〈그림 4〉 폭행·상해 범죄의 공식통계상 증가추세와 범죄피해조사 감소추세



〈그림 5〉 성폭력 범죄의 공식통계상 증가추세와 범죄피해조사 감소추세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의 그래프들은 〈그림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개별 범죄, 즉 강도 범죄, 절도 범죄, 폭행·상해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서 나타난 공식통계상의 증가추세와 범죄피해조사상의 감소추세를 나타낸 것들이다. 다시 말해, 이 그래프들은 〈그림 1〉과 같은 양상이 범죄피해조사에 포함된 어느 특정 유형의 범죄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에 포함된 모든 범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단, 〈그림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들 또한 두 추세의 상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정도 ‘이미지화’한 것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수치간 격차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3. 두 가지 상반된 추세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 그 한계

이른바 길거리 범죄(street crime)에 국한된 현상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범죄가 공식통계상으로는 계속 늘어나

고 있는 동안에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범죄들이 공식통계상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사이에 범죄피해조사상으로는 5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는 대략적인 비율의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그 놀라움은 경악 수준으로 상승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지켜본 범죄통계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놀랍게도 그에 관한 설명이 이외로 많지 않다. 아니, 1999년에 출간된 범죄피해조사 보고서(박순진 · 최영신, 1999)에 소개되어 있는 짧은 설명과 2003년도에 쓰여진 박순진(박순진, 2003)의 논문, 그리고 2004년도에 쓰여진 최인섭 · 황지태(최인섭 · 황지태, 2004)의 논문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많지 않은 선행 연구에서 앞서 언급해 왔던 괴리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범죄 신고율이었다. 이는 범죄피해 추세 분석이 처음 시작된 1999년 범죄피해조사 보고서에서 두 자료의 괴리에 대한 설명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1993년부터 1996년, 그리고 1998년도까지 범죄피해 신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범죄피해조사상 범죄피해가 감소하는 추세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상으로는 범죄가 늘어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즉 공식통계상 늘어난 범죄는 실제 범죄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되는 범죄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 그것이다(박순진 · 최영신, 1999: 72-73). 이와 같은 설명은 공식통계가 범죄의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어 처리된 사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Sanders, 2001: 43-48)에 근거하는 것이며,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고소 및 고발을 포함한 신고 여부를 특히 중요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순진은 2003년도 논문에서 신고율과 관련하여 두 자료 사이에 나타난 괴리현상을 설명하는 논리를 좀 더 정교화하였다. 그는 당시 세 차례의 범죄피해조사 원자료를 재구성하여 실제로 범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공식통계상으로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하였는데, 그 방법은 범죄피해조사에서 집계된 신고율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에 신고된 신고인원과 범죄건수를 추정해 보는 것이었다(박순진, 2003: 118-119).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

는 그와 같은 원자료를 다시 제시하지 않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설명은 원자료의 재구성 없이 다음 <표 1>과 같이 가상의 상황만을 설정하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1> 실제 범죄가 줄어도 신고율의 증가로 공식통계상 범죄가 느는 경우

모집단이 천명이라 가정	A시점	B시점	C시점
실제 범죄	100건	80건	50건
신고율	10%	20%	40%
공식통계상의 범죄	10건	16건	25건

<표 1>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우선 모집단이 1,00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A, B, C 세 시점에서 그 인원의 변동이 없으며 한 시점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로지 한 건의 범죄피해만을 경험함과 동시에 사법기관은 오로지 신고에 의해서만 범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기로 하겠다. A시점에서 실제 10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신고율이 10%였다면, 이 때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10건이 될 것이다. B시점에서는 80건으로 실제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신고율이 20%로 증가하였다. 이 경우 B시점의 실제 범죄 발생률은 A시점보다 줄었지만, 신고율 증가의 영향으로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16건으로 증가하게 된다. C시점에서는 실제 범죄가 50건으로 더 줄었지만, 신고율이 40%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25건으로 더욱 증가한다. A시점과 C시점을 비교하면, 실제 범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1990년 초반과 2000년대 중반 사이에 나타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추세상의 상반성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강도 범죄의 평균 60여%, 절도 범죄의 평균 70여%가 신고(강도는 신고 건수의 대략 80-90%가 피해자 신고이고, 절도는 신고 건수의 대략 90여%가 피해자 신고임)에 의해 수사에 착수된다는 사실 등(대검찰청, 『범죄분석』의 각 연도 해당 통계 참조)으로 미루어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현실적 타당성을 수용하여 최인섭과 황지태는 2003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이전의 상반된 두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림 6>과 같은 도식을 그려내면서 공식통계에서의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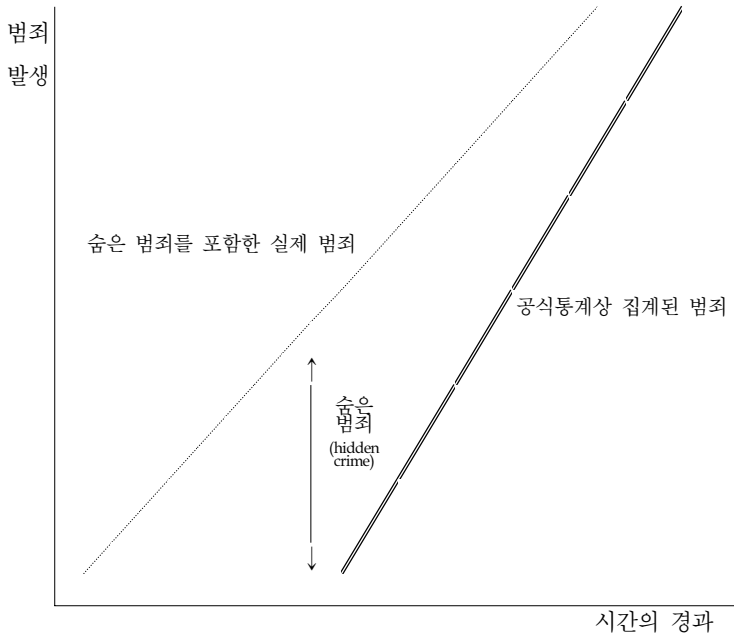
증가 추세와 범죄피해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최인섭 · 황지태, 2004: 12).



〈그림 6〉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추세적 상반성 설명

(최인섭 · 황지태, 2004: 12)

그런데, 범죄피해 신고율과 관련된 이와 같은 논의들은 범죄피해조사의 결과가 같은 기간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와 추세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 한 축일 뿐이다. 두 자료의 괴리를 신고율 증가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은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범죄피해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상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신고율의 증가로 공식적인 범죄 발생 통계가 증가하는 현상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영역이 꾸준히 좁혀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식통계와 실제 범죄가 모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나 있다.



〈그림 9〉 공식통계와 실제 범죄가 모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기존 선행 연구들이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현상을 신고율과 관련해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특히 박순진은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추세와 그 사이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범죄 증가 현상이 각각 별개로 설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식통계상 범죄 발생 증가 현상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지적(범죄피해조사 응답자들이 범죄추세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 내린 일관적인 평가에 대한 언급)하며 공식통계보다는 범죄피해조사 결과가 보다 현실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다소 조심스러운 추론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IMF 시기 동안 범죄가 줄었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시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등이 범죄기회의 측면에 영향을 미쳐 범죄 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박순진, 2003: 120-123). 하지만 그와 같은 논의들은 여전히 범죄피해 감소 추세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 첫 번째 설명은 결과적으로 오로지 범죄피해조사 내부의 근거만을 가지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범죄 피해조사상의 방법론상 문제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경우 효과적이고 확실한 반박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설명의 경우, 특정 시기 범죄가 정말 감소했는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피해조사상 범죄피해 감소 유발의 ‘직접적인’ 요인 설명이 아닌 간접적인 추론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 후에 쓰여진 최인섭과 황지태의 논문에서도 특정 시기 범죄 감소의 진실 여부를 확실히 깨닫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공식통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범죄피해조사가 좀 더 신뢰할 만한 것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확신’이 유지되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간접적인 몇몇 추론, 가령 침입절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비율의 증가나 2002년 월드컵이 초래한 사회적 통합 효과가 범죄피해율을 낮춘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추론들만을 나열함으로써(최인섭 · 황지태, 2004: 18) 이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설명을 대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감소 현상에 따른 범죄의 감소 설명

1994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나타난 범죄피해의 추세적인 감소 현상이 같은 기간에 우리사회에서 —적어도 특정한 유형의— 범죄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관성을 지적함으로써 그 결과의 신뢰성을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와 같은 방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일차적으로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사이의 추세적 상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더 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범죄통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공식통계 내부에서 공식적인 범죄 발생 통계의 추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필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공식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된’ 범죄만을 다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에 의해 왜곡된 측면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공식통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죄 감소의 직접적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공식적인 범죄 통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계의 예 중의 하나로 범죄자의 초범·경력범별 구성을 들어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특별히 범죄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하여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거나 혹은 형사사법기관이 역시 특정한 편향을 가지고 범죄자를 수사⁷⁾하는 ‘조직적 문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범죄피해 신고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경찰의 범죄 인지 수준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그 구성은 숨은 범죄자까지 포함한 실제의 범죄자 집합의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공식통계가 어떤 측면에서 일종의 표집(sampling)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죄피해 신고율이 높아지거나 경찰의 범죄 인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표본(sample)의 크기가 커지는 되는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다.

범죄피해조사상에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현상의 진실 여부를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언뜻 불필요해 보이는 듯한 위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표 2>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표 2>는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조사 항목과 긴밀하게 연관된 길거리 범죄(street crime)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와 관련된다. 이 표는 기본적으로 1978년부터 2007년도까지 공식통계에 나타난 절도범죄자들의 수, 초범 및 재범(재범 이상 전과자) 절도범들의 수, 그리고 이들 각각의 인구 대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구 10만 명 당 절도범죄 초범수이다. 이 수치는 1978년부터 1987년 즈음까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을 거쳐 2000년대로 나아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초범 절도범죄자의 수와 범죄경력을 가진 절도범들의 수 사이의 비율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초범의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고 경력범죄자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 역

7) 이에 관해 경찰이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경력범죄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관행을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경찰이 ‘늘’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특정 시기에만 국한하여 경력범죄자들에 대한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

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절도범죄자들의 초범/재범 비중

연도	범죄자수	인구대비 범죄자수*	초범자수	인구대비 초범자수*	범죄경력자	인구대비 전과자수*
1978	52,156	141.1	41,168	111.4	10,988	29.7
1979	48,598	129.5	37,841	100.8	10,757	28.7
1980	63,358	166.2	49,879	130.8	13,479	35.4
1981	69,124	178.5	54,260	140.1	14,854	38.4
1982	61,358	156.0	46,779	119.0	14,579	37.1
1983	72,505	181.7	53,038	132.9	19,467	48.8
1984	67,992	168.3	47,527	117.6	20,465	50.6
1985	67,527	165.5	45,794	112.2	21,733	53.3
1986	68,365	165.9	46,276	112.3	22,089	53.6
1987	62,328	149.7	41,763	100.3	20,565	49.4
1988	57,396	136.6	37,538	89.3	19,858	47.2
1989	52,849	124.5	34,914	82.2	17,935	42.3
1990	47,783	111.5	31,638	73.8	16,145	37.7
1991	46,185	106.7	30,675	70.8	15,510	35.8
1992	46,828	107.0	30,421	69.5	16,407	37.5
1993	53,031	120.0	35,653	80.7	17,378	39.3
1994	50,630	113.4	31,349	70.2	15,244	34.1
1995	51,721	114.7	31,146	69.1	16,258	36.1
1996	52,735	115.8	29,721	65.3	17,752	39.0
1997	55,227	120.2	30,276	65.9	19,336	42.1
1998	71,706	154.9	36,055	77.9	28,668	61.9
1999	66,386	142.4	30,265	64.9	29,095	62.4
2000	65,692	139.7	29,945	63.7	28,487	60.6
2001	57,361	121.1	24,729	52.2	26,475	55.9
2002	65,752	138.1	27,052	56.8	30,045	63.1
2003	61,303	128.1	26,108	54.6	29,162	60.9
2004	58,762	122.3	26,679	55.5	27,805	57.9
2005	58,458	121.4	26,032	54.1	27,817	57.8
2006	64,812	134.2	29,519	61.1	29,917	61.9
2007	71,575	147.7	32,913	67.9	33,152	68.4

* 인구10만명당 각 범죄자의 수

※ 원자료출처 : 『범죄분석』1979-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통계정보시스템.

1980년대 후반 이후 절도 범죄 초범들의 상대적·절대적 비중이 동시에 축소되어 왔던 시기는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일치는 우연일까? 필자는 그것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며 이와 같이 나타난 공식통계상의 양상이 범죄피해조사상의 추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가설적 설명은 범죄시장⁸⁾에도 신규 진입자와 은퇴자가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범죄시장은 신규 진입자와 은퇴자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유지된다. 일단 범죄시장이 형성되면 최소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라도 은퇴자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시장이 나름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자가 계속 충원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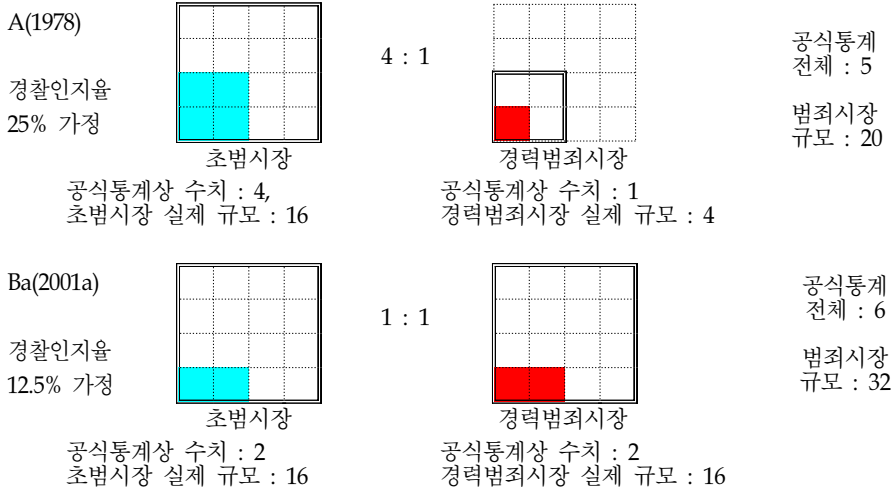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범죄시장의 규모이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발생률은 범죄시장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늘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범죄의 발생률은 소수의 범죄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경우엔 범죄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범죄시장의 규모가 결국 범죄 발생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범죄시장의 규모가 극도로 축소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상황에서 경력범죄자들이 제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범죄시장 규모 자체의 왜소함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경력범죄자들이 형사사법기관에 아주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꾸준히 감소하면 범죄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면 그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범죄통계에서 범죄시장으로의 꾸준한 신규 진입자 증가 경향이나 혹은 반대로 이들의 꾸준한 감소 추세를 발견해 낼 수 있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대략 10여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인 범죄 ‘발생’ 통계와는 무관하게 파악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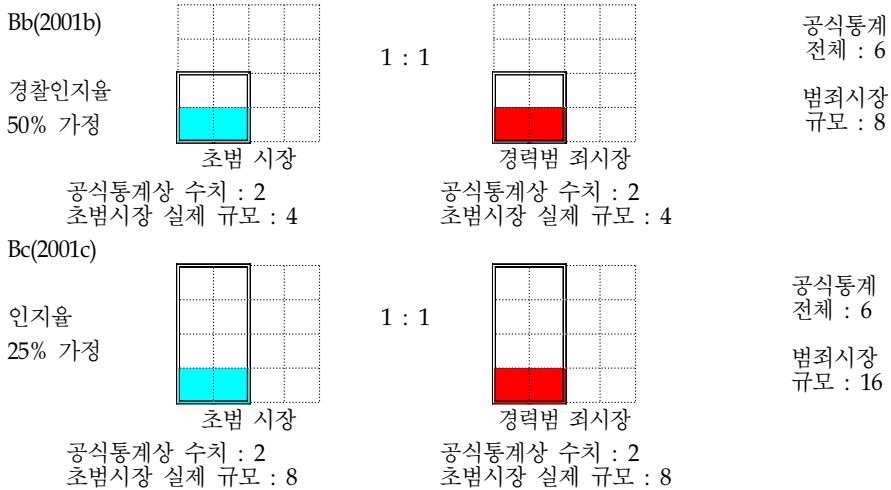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설명을 염두에 두고 <표 2>를 다시 보면, 최소한 절도범죄에서 이미 80년

8) 논의상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사용한 용어로, 이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집합’ 정도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여기서의 범죄시장은 공식통계상 나타난 범죄자들의 수를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했을 때, 그 모집단에 해당되는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시장에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범죄자로서 인지된 범죄자들과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인지되지 아니한 ‘숨은 범죄자’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뒤에 나오는 ‘초범시장’과 ‘경력범죄시장’을 합친 것이기도 하다.

대 후반부터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범죄경력자 대비 초범자들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과 인구 10만 명당 초범자의 수가 적어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 경향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모두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표에 나타난 수치들을 그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집단의 규모(범죄시장의 규모, 초범시장⁹⁾의 규모, 경력범죄시장¹⁰⁾의 규모)와 그 규모의 시간에 따른 변동 사항은 여전히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 상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 10만 명당 초범자의 수가 실제로 신규 범죄의 진입 감소(초범시장 규모의 축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인구 10만 명당 초범자 수치가 공식통계상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도 그 모집단인 초범시장의 규모가 그대로이거나 더 커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 9) 초범시장은 경력범죄시장과 함께 범죄시장의 구성 요소이다. 필자는 이를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경찰에 인지되지 아니한 무전과와 범죄자들과 초범으로 경찰에 인지된 범죄자들의 합’ 정도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필자는 공개통계상에 나타난 초범자 통계치를 일종의 표본으로 간주했을 경우에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 10) 경력범죄시장은 초범시장과 함께 범죄시장의 구성 요소이다. 필자는 이를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경찰에 인지되지 아니한 전과 범죄자들과 재범 이상의 전과를 가진 상태에서 경찰에 인지된 범죄자들의 합’ 정도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필자는 공개통계상에 나타난 경력범죄자 통계치를 일종의 표본으로 간주했을 경우에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림 10〉 인구대비 초범수의 감소와 범죄시장 규모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설명들이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은 그림들을 가지고 그에 관한 좀 더 면밀한 설명을 시도할 경우 모집단의 규모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게 된다. 〈그림 10〉은 범죄시장을 초범시장과 경력범죄시장으로 분할한 다음, 공식통계상 나타난 초범자의 수를 모집단으로서의 초범시장의 표본 수로, 공식통계상 경력범죄자의 수를 경력범죄시장의 표본수로 간주한다. 이 같은 그림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가정 중의 하나는 초범자의 수와 경력범죄자의 수 사이에 나타나는 구성비가 그 각각의 모집단인 초범시장과 경력범죄시장의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내용이며, 그 가정은 그리 비현실적이지 않다. 이 설명에 있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율(신고율을 포함하며 신고율보다 넓은 개념임은 물론이다)이다. 사실 이 비율 역시 실제 범죄시장 규모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 다만, 범죄피해자조사를 통한 신고율 측정으로 매 조사마다 신고율의 증감 추세를 파악할 경우 범죄 인지율의 증가 추세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모집단의 규모에다가 인지율을 곱하면 표본의 수가 된다는 점에서 범죄 인지율은 표본과 모집단을 연결하는 매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는 기본적으로 A와 B(A시점이 B시점보다 선행)라는 두 시점을 상정

하고 있다. A시점은 기준 시점으로서 여기서는 표본의 수, 즉 공식통계상 인지된 범죄자의 수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율(25%라고 하자)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A시점에서는 인지율이 25%이고, 공식통계상 초범의 수가 4명, 경력범의 수가 1명이므로, 인지율을 통해 역산하여 초범시장의 규모가 16명이고, 경력범시장의 규모는 4명이 된다. 그리하여 공식통계상 총 범죄자 수는 5명이 되고, 전체 범죄시장의 규모는 20명이 되게 된다. 한편, B시점에서는 표본의 수, 즉 공식통계상 인지된 범죄자가 초범의 경우 A시점에 비해 똑같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경력범의 경우 A시점에 비해 똑같이 두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인지율에 따른 세 가지 상황을 각각 가정해 보았다. 그 중 하나(Ba)는 기준 시점(A)보다 인지율이 낮아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Bb)는 기준 시점보다 인지율이 높아진 경우이며, 나머지 하나(Bc)는 기준 시점과 인지율이 같은 경우이다.

먼저 Ba를 보면, 앞서 우려했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시점에서는 A시점에 비해 공식통계상 초범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Ba와 같이 인지율이 A시점의 절반으로 떨어진 경우, 실제 초범시장의 규모는 두 시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 A, B 두 시점 모두에서 실제 초범자들의 모집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상으로는 초범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법기관의 범죄인지율이 50%로 A시점보다 증가한 Bb의 경우엔, Ba와 똑같은 공식통계상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범시장의 규모가 4명으로 A시점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A에서 Ba로의 시간 경과에서 공식통계상 총 범죄자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명에서 8명으로 대폭 줄어든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율이 A시점과 동일한 경우인 Bc를 보면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율이 두 시점에서 동일하였을 때에도 Ba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식 통계상 초범수의 감소는 실제 모집단(초범시장) 규모의 감소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다소 복잡한 설명들을 앞의 <표 2>와 다시 연결하여 요약하면, 공식통계상에서 초범자 수(인구대비 초범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율이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실제로 초범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통계상 초범·재범 분할통계표에서 인구 대비 초범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단지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율이 줄어들지 않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초범시장 규모의 축소를 증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초범시장의 지속적 규모 감소는 결국 범죄 발생률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특정시점에서 절도범죄의 초범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동시에 -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자 신고율 등으로 추정컨대 -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율이 최소한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조합할 경우,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추세적 범죄피해 감소 현상과 관련해, 그것이 그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다.

5. 결 어

본고는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에 나타난 괴리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까지의 신고율 중심의 설명이 이 현상의 또 다른 한 축, 즉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범죄피해 감소 추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범죄피해조사들이 실시되었던 199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토대로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는 범죄피해 감소 현상과 관련한 설명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설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이와 같은 설명을 좀 더 보충하고 실질적인 범죄 감소를 좀 더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설명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 왜 1990년대 초반 혹은 1980년대 말경부터 범죄시장에의 신규 진입이 감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를 이어 나와야 할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공식통계를 통한 복잡한 수치 계산 작업을 넘어 좀 더 본격적인 사회적 변인을 사용한 사회학적 설명이 시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05, 『경력범죄자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기광도, 200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개괄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5-19., 한국피해자학회.
- 김은경 · 황지태 · 박형민, 2008, 『범죄분석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미출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0, “우리나라의 범죄문제 —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2호 : 241-2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심영희 ·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김준호 · 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이천현 · 홍영오 · 박형민 · 김한균 · 권수진, 200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79-2008.
- 박순진,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의 비교”, 『피해자학연구』제11권 제1호 : 107-127., 한국피해자학회.
- 박순진 · 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 1999a, 『범죄경력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 — 경찰 및 교정 기록을 통한 종단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b, “범죄경력학의 질적 변화: 심각화”, 『형사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김성언 · 류철원, 1992, 『강 · 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조정희, 1990,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2호 : 277-3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원, 1998,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피해자학연구』제6호 : 207-228. 한국피해자학회.
- 이병기, 류철원, 1996,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23 : 107-1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 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 · 탁희성 · 윤동호 · 강석구 · 박형민 · 김한균, 20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원기 · 정윤정, 2003, “사회구조적 기능성 왜곡으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범비행 청소년 연구”, 『피해자학연구』제11권 제1호 : 207-249., 한국피해자학회.
- 최인섭, 1990, “근대화, 사회발전과 범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제2호 : 263-27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1992a, “범죄피해조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4호 : 59-1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1992b, “서울의 범죄피해조사”,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57-88., 한국피해자학회.
- _____, 2002,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 1964-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황지태, 2004, “범죄피해를 감소 원인에 대한 검토 : 2002년도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제12권 제1호 : 5-23., 한국피해자학회.
- Agnew R.,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 A Strain Theory Explanation”, Terence P. Thornberry(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 Advances in Criminal Theory Vol. 7.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 Black D. J., 1970, “Production of Crim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5.

- Booth A. D., David R. J. & M. C. Harvey, 1977, "Correlates of City Crime Rates : Victimization Survey Versus Official Statistics", *Social Problems*, Vol. 25, No 2.
- Clinard, M. B., 1977, "Comparative Crime Victimization Surveys : Some Problems and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Penology* 6: 221-231.
- Cnator, C. & K. C. Land, 1985, "Unemployment and crime rate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317-332.
- Lodhi, A. Q. & C. Tilly, 1973, "Urbanization, Crime and Collective Violence in 19th-Century Fra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 296-318.
- Menard, S., 1987, "Short-term trends in crimes and delinquency : a comparison of UCR, NCS and Self-Report data", *Justice Quarterly* 4: 455-474.
- McHale, V. E. & E. A. Johnson, 1976,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Crime in Imperial Germany : Part I ", *Social Science History* 1 : 45-78.
- _____, 1977,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Crime in Imperial Germany : Part II ", *Social Science History* 1 : 210-247.
- Quinney, R., 1965, "Suicide, Homicide an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Forces* 43 : 401-406.
- Sanderson, J.(김형만 · 이동원 공역), 2001,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 Yoon Ok-kyung & Joo Hee-jong, 2005, "A contextual analysis of crime rates : The Korean case", *Crime, Law & Social Change* 43: 31-55.

Critical Comparison of Official Statistics to Victimization Data : Explaining the Reduction of Victimization Rates

Hwang, Ji-Tae^{*}

It is not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explanation for contrast between official statistics and victimization data from early 1990s to middle 2000s in Korea —While the official statistics showed increasing rates since early 1990s, the victimization data indicated rather decreasing rates,— has been mainly related with increased reporting.

Of course, such way of explaining is still partially valid. But, although the increase in the official statistics might be taken as a sign of increased reporting, increased reporting cannot verify the possibility of real decrease in crime rate.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direct factors for declining victimization rates or the possibility of real decrease in crime rate from early 1990s to late 2000s, focusing on the facts that new entry for crime market has been reduced during the same period.

❖ Keywords : Victimization Data, Official Statistics, Crime Market

투고일 : 2009. 2. 11 / 심사(수정)일 : 2009. 2. 23 / 게재확정일 : 2009. 2. 27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